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13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2.

발 의 자:서영교·김승원·김민철

황운하 · 임호선 · 이규민

장경태 · 오영환 · 안민석

신정훈 • 이수진 • 이병훈

이해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경감 계급과 6급까지 근속승진 제도를 운영중이나,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일반직공무원(6급 까지)에 비해 2년이 긴 실정임. 경찰은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어렵고, 이로 인해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근속 승진이 가능한 최상위 계급까지 승진하지 못하고 대다수 경위로 퇴직하고 있어 연금 등 처우에 있어서도 불리한 실정임.

경찰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최소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,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 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,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 마련이 필요함(안 제11조의2제1항제4호 개정). 법률 제 호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의2제1항제4호 중 "10년"을 "8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근속승진) ① 경찰청장	제11조의2(근속승진) ①
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제	
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	
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	
직한 사람을 경장, 경사, 경위,	
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	
수 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	4
하려는 경우 : 해당 계급에서	
<u>10년</u> 이상 근속자	8년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